2012. 1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 베트남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베트남

# CONTENTS


CHAPTER 01 수입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177
제2절 원산지 규정 ····· 189
통관부서 연락처 ····· 192

CHAPTER 02 관세정책 및 제도

제1절 관세정책 ····· 197
제2절 관세제도 ····· 200

CHAPTER 03 검역제도

제1절 품목별 검역제도 ····· 207

CHAPTER 04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 211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 215
자료출처 ····· 220

chapter 01

# 수입 통관제도

##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1. 통관제도

#### 가. 통관관리

□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의 원칙**

○ 수출, 수입, 국경통과 되는 물품 및 출경, 입경, 국경통과 하는 운송수단은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하며 법률규정에 따른 올바른 경로, 국경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세관검사는 관세관련 국가관리를 보장하고 수출입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정보분석, 화주의 법규준수도 평가, 관세법률 위반에 관한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 화물, 운송수단은 세관절차를 이행한 후 통관하게 된다.

○ 통관절차는 법률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인력 배치 및 업무 시간은 수출, 수입 및 입국, 출국, 국경통과 활동에 부합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 세관 신고

○ 세관신고는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된다.

○ 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자가 전자신고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 □ 통관절차 대리인

○ 통관절차 대리인은 수입·수출화물에 관한 통관절차 업무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관신고인이다.

○ 통관절차 대행인은 관세법률과 세관신고 업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정부는 통관절차 대행인의 등록과 활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나. 통관수속

### □ 통관절차

○ 통관절차 시 세관 신고자의 의무

- 세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통관서류에 속한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전자통관 절차시 세관신고인은 세관의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 통관서류를 작성 및 전송한다.
-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를 위해 규정된 장소로 물품, 운송수단을 이동한다.
- 법률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다.

○ 통관절차 시 세관 직원의 의무:

-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다. 전자통관 절차시 전자자료처리시스템을 통해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다
- 통관서류 심사 및 화물, 운송수단을 실제로 검사하고
- 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비용 징수하여
- 화물, 운송수단의 통관을 결정함

## □ 통과절차 장소

○ 통과절차를 하는 장소는 국경관문 세관지국과 국경관문 외에 세관지국이다. 전자통관절차 시 통관서류 접수 및 처리장소는 성, 성 합동, 중앙직할시의 관세사무소가 될 수 있다.필요한 경우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장소에서 수출 및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검사가 실시할 수 있다.

## □ 세관신고 및 서류제출 기한

○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기한내에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하기 전, 또는 국경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5일간 통관절차를 위한 효력이 있다.
- 수출물품의 경우, 늦어도 운송수단이 출경하기 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5일간 통관절차를 위한 효력이 있다.
- 출국 및 입국자의 휴대수하물의 경우, 운송수단이 국경관문에 입국하는 시점 및 출국 운송수단이 승객수속을 완료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입국자의 이동 전 후 위탁수화물의 경우, 이 조1항의 규정에 따른다.
- 국경통과 화물 및 운송수단의 경우, 화물과 운송수단이 최초 국경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화물과 운송수단이 마지막 국경관문을 지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출입국의 경우, 항만관리공단이 해당 운송수단이 도선장소에 도착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 이내 및 운송수단의 출국 1시간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항공운송수단을 통한 출입국의 경우 운송수단이 국경관문에 도착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운송업체가 승객에 대한 출국수속, 화물에 대한 수출수속을 완료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철도, 육로, 수로를 통한 출입국의 경우 운송수단이 최초 국경관문에 도착한 시점 및 운송수단이 출국을 위한 마지막 국경관문을 지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 관세공무원의 통관절차 기한

○ 관세공무원은 세관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직 후 법률규정에 따라 이를 접수, 등록, 검사한다. 통관서류의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세관신고인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세관신고인이 법에 정한 통관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 관세공무원이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 비율에 근거한 일부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늦어도 근무시간 기준8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 물품전체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하는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늦어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물품전체에 대한 실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중 수출, 수입 물품의 수량이 방대하고 검사가 복잡한 경우, 검사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기준 8시간을 넘지 않는다.
- 출국, 입국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의 경우, 수출, 수입물품의 하역과 승객의 출입국 수속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은 이 법 25조 규정에 따른다.

### □ 통관서류

○ 통관서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세관신고서
- 상업영수증
- 물품매매계약서
- 법률에 허가서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과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서
- 세관신고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하는 물품별 증명서류
- 통관서류는 문서서류 또는 전자서류가 될 수 있다. 전자서류는 법률규정에 따른 완전성과 형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에서 제출, 제시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관세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된 경우, 통관서류에 속한 일부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검사 시점 변경 또는 물품 실물검사 면제결정 시점 이전의 세관신고서의 보완, 수정, 교체; 잠정 세관신고서의 제출 및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완료; 일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다수 수출입 건에 대한 일회신고가 허가된다.

### □ 물품 및 운송수단의 통관

○ 물품, 운송수단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된다.

○ 다음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물품, 운송수단도 통관될 수 있다.

- 통관서류 중 증명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으나 관세기관이 기한내 추후 제출에 동의한 경우
- 규정된 기한내에 세액은 완납하지 못하였으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관세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세액납부의 유예가 허가된 수출입 물품 제외

○ 화주, 운송수단주가 관세관련 행정처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했거나, 신용기관 또는 은행활동이 허가된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 수출 및 수입 허가여부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물품이나 화주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 관세기관은 세관감시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수출,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 산정을 위해 가격확정, 감정자문, 분석, 분류가 필요한 경우, 화주가 이 조 제2항 제b호, 제3항 규정에 따른 자진신고, 자진산정에 근거한 세액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통관될 수 있다.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세액은 가격확정, 감정자문, 분석, 분류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 긴급한 요구가 있는 수출, 수입 물품의 통관은 이 법 제35조 규정에 따른다.

##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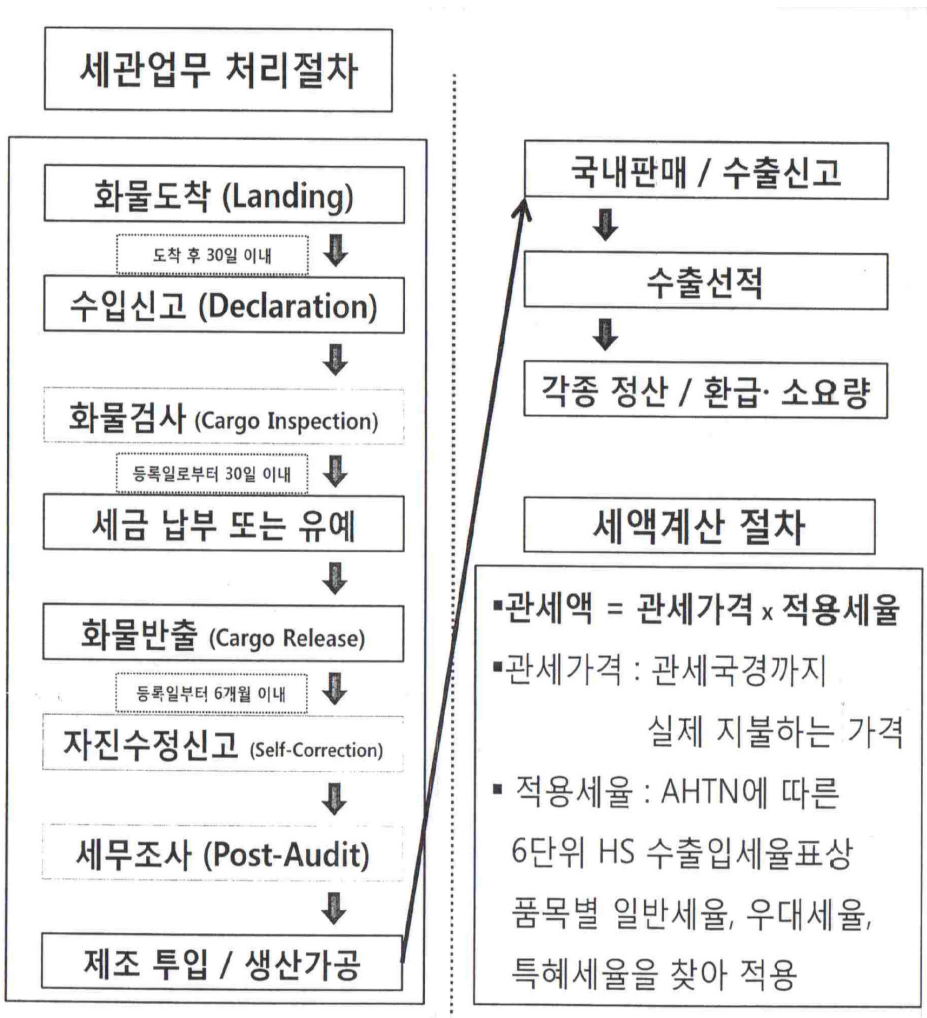


○ 수입업자, 수입업체의 경우

– 통관절차 시 세관에 관련 서류 제출

○ 국가 행정기관의 경우

※ 1 단계 : 서류접수, 서류심사, 실제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화물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 서류 접수

– 세무코드 입력 세관신고서 조건 심사 (품목별 정책, 위반, 강제)

- 신고정보 입력이나 웹사이드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접수번호를 발급하고 진행 상황 프로필
- 신고서 등록 (접수번호 작성)
- 세관 검사형식 및 검사수준양식 통보
- 서류 심사
- 화물을 실제 검사 형식 및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
- 부서 리더가 승인후 시스템에 검사 형식 정보를 입력 및 검사 결과 처리
- 세관절차 완료 상태 인증 후 실제 검사 면제된 화물의 경우 3 단계로 이동 또는 실제 검사 받아야 하는 화물 경우 2단계로 이동

※ 2 단계 : 화물 실제검사 및 통관 (실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화물 경우)

- 화물 실제검사 이전 신고자가 보충신고 요청시 재심사
- 실제 검사결과 기록 및 통보
- 검사 결과 처리
- 세관절차 완료 상태 인증

※ 3 단계 : 세관비용, 세금 납부, 세관절차를 완료상태로 인증 도장을 찍고 세관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반납

※ 4 단계 : 세관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 심사

**□ 진행방법**

○ 세관기관에 직접 제출

- 필수서류

a) 세관신고서 - 원본 2부

b) 상업영수증 - 원본 1부

c) 물품매매계약서

d) 법률에 허가서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과 출국, 입국,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서

d′) 세관신고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하는 물품별 증명서류

- 통관서류는 문서서류 또는 전자서류가 될 수 있다. 전자서류는 법률규정에 따른 완전성과 형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에서 제출, 제시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관세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된 경우, 통관서류에 속한 일부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검사 시점 변경 또는 물품 실물검사 면제결정 시점 이전의 세관신고서의 보완, 수정, 교체, 잠정 세관신고서의 제출 및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 완료, 일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다수 수출입 건에 대한 일회신고가 허가된다.

### □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

○ 세관신고인은 충실하고 기한내에 신고, 세액 산정, 납부를 하고 본인의 신고, 산정에 책임진다.

○ 세액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에 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액신고인은 이를 통관절차를 진행한 관세기관에 통보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한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와 수수료 납부과정에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 세액과 수수료 관련 관세기관의 결정을 이행한다.

### □ 과세시점, 납부기한

○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시점, 납부기한은 세액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 관세기관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처리를 기다리는 일시보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 납부기한은 처리결정일로부터 산정된다.

### □ 과세가격

○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 정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 수입관세 산정방식

○ 제품수입 납부금액 = A + IT + (SCT) + VAT

- A = 제품가격, IT = 수입관세 = A * 수입세율,
- SCT* = 특별소비세 = (A+IT) * 특별소비세율
- VAT = 부각세 = (A+IT+(SCT)) * 부가세율

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자동차, 담배, 주류 등)에 따라 적용됨

## □ 수출, 수입물품 품목분류 및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

○ 수출, 수입물품 품목분류는 물품분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은 현행 세율표에 근거한다.
- 세관신고인의 품목분류 결과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기관은 수출,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 분류, 세율확정을 위해 수출, 수입물품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물품의 견본을 추출할 수 있다. 세관신고인이 관세 기관의 분석, 분류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민원제기, 민원해결은 법률규정에 따른다.

○ 정부는 수출, 수입 물품 품목분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 수입식품 검사절차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수입식품검사절차는 아래의 ①~⑥의 순서에 따라 진행

① 수입식품 신고

- 베트남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내용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있어야함

② 신고서류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기준 신고서 1부
- 기업의 기초 기준서 2부 : 식품수출기업의 직인, 인정기준, 생리화학기준, 미생물기준, 중금속기준, 식품첨가물기준, 사용기한, 사용방법, 보관방법, 제조

공정 등을 포함

- 원산지지 국가의 검사당국으로부터 취득한 해당식품의 주요성분 및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품질검사결과서 또는 베트남에서 지정하는 기술기관의 검사결과인증서
- 식품수출기업 직인이 포함된 식품표시내용서 또는 상품표시제안서
- 원산지지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취득한 자유판매인증 및 보건인증
- 특수식품(의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영양식품, 중환자 영양 공급을 위한 식품, 필수 영양소 보조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신고서류에는 연구 및 임상실험 결과 기타 관련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보건부가 지정한 당국의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분석 결과가 첨부되어야 함(베트남에서 분석이 불가능 할 경우 원산지지 국가나 제 3국 검사당국의 검사결과도 인정)

③ 신고서류 심사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에서 서류접수 후 법규 준수여부 심사
-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기관은 서류 검토
-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품질기준신고를 한 경우는 서류심사 종료 후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관리국의 직인이 첨부된 기업의 기초기준서 사본 1부 반환
- 신고기준이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에 통보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품질기준신고를 재작성토록 함

④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

- 수입식품이 반입된 지역의 검사당국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등록을 위한 검사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요건 관리규정에 기초하여, 안전·위생 및 품질에 대한 강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기간동안 적용되는 수입식품목록 공표
- 베트남 정부와 외국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국제기구 감독하에서 허가받은 조직·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수입식품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관련 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가 아니면 검사대상에서 제외

※ 베트남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국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검사 책임이 있음

⑤ 검사인증서 발급

- 국가 품질관리대상 수입식품일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시하는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인증을 받아야함
- 위에서 언급한 목록에서 정하지 않는 수입식품은 식품위생·안전 및 품질관련 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검사를 받음

⑥ 검사결과의 조치

- 위생·안전 및 품질 요건을 만족한 경우, 인증서가 세관에 통보되고 만족하지 못한 수입식품은 베트남 식품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처리,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함
- 베트남 식품관리청에서 재처리승인을 받아 재처리한 식품은 재검사하여 검사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수입식품검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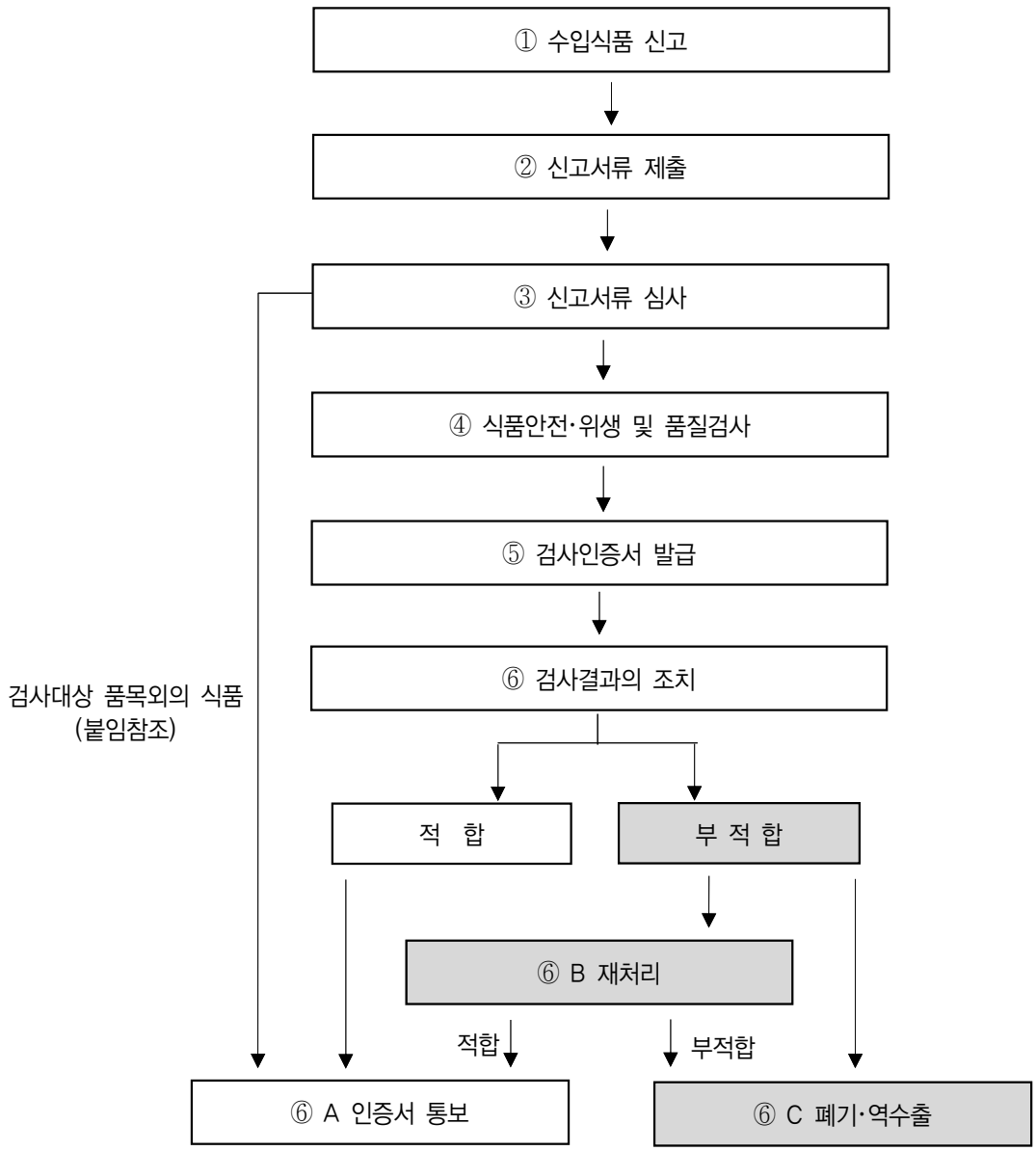

## 제2절 원산지 규정

### 1. 원산지규정 일반제도

#### 가. 우대 원산지증명서 규정

**□ 국제 조약에 따라 원산지 우대 규칙**

○ 수출,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세금에 대한 우대 및 비관세를 받는 것은 베트남이 서명이나 가입된 국제 조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 일반관세 환경 설정 및 기타 일방적 특혜에 따라 원산지 우대 규칙**

○ 수출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하여 보급 세관 우대 및 기타 일방 우대를 받는 것은 해당 우대에 대한 수입국의 기원의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 나. 우대없는 원산지 증명서 규정

**□ 원산지가 있는 화물**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있는 화물이라고 한다.
- 완전한 원산지
-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 완전한 원산지가 있는 화물 확인**

○ 완전한 원산지가 있는 화물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한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로 인증
- 해당국가나 지역의 나무나 나무에서 수확된 제품
- 해당국가나 지역에서 키우는 동물
- 상기 조건에서 수속된 동물의 제품
- 해당국가나 지역에서 사냥, 덫 설치, 어업, 채집과정을 통하여 받은 제품

○ 상기 1번 항목부터 4번 항목까지 드러내지 않은 광산이나 해당국가나 지역의 땅, 물, 해저에 자원 생성된 본질이다.

○ 국가 및 지역의 주변에 있는 물, 대양이나 대양 밑에서 받은 제품입니다. 다만 해당국가, 지역은 국제법에 따라 그 물, 대양, 해저에 대한 개척 권한이 있다.

○ 대양에서 해당 국가에게 등록된 배로 사냥 받은 어업과 타 해산물이다. 그 배는 해당국가의 국기를 걸을 수 있다.

○ 상기 7번 항목에 있는 제품에게서 배에서 직접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이다. 이것도 해당국가 및 지역에서 등록되고 해당 국가의 국기를 걸을 수 있다.

○ 해당국가 및 지역에 있는 물품은 기초 지능을 사용 못하며 수리나 복귀할 수 없고 버리거나 재활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해당국가 및 지역에서 상기 제1항목부터 제9항목까지 드어낸 제품에 생산된 화물이다.

**□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화물 확인**

○ 상기 제6조의 2항목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화물은 한 국가 및 지역에서 최종 생산 공정을 통하여 화물의 기본 특징이 되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원산지가 있다고 확정된다.

○ “화물 코드 전환”는 상기 1번 항목에서 화물의 기본 특징 변경하기의 확정 기준이다.

○ “가치의 퍼센트 비율” 기준과 “화물 가공이나 조조 공정” 기준이 추가로 참조로 화문 기본 특징 변경하기를 확정한다.

○ 상공부는 상기 2번 항목에서 “가치의 퍼센트 비율” 기준과 “화물 가공이나 조조 공정” 기준을 사용된 화물 리스트를 발행한다.

## 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화물 원산지 검정 수속

### □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화물의 원산지 증명서 규정

○ 수입 화물의 원산지 증명서는 아래 경우에는 통관절차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베트남법과 베트남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베트남과 특혜 세율 및 비관세의 적용된 국가 또는 국가집단에서 수입한 화물 경우(수입자가 해당 특혜 관세율을 받고 싶은 경우)

○ 상호의 기초 또는 일방적 기준으로 베트남이 정한 최혜국대우 관세가 있는 국가에서 원산지가 있는 화물 경우

-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해당 국가의 원산지가 있는 화물에 대한 보증하며 그 보증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베트남과 국제 조직들이 사회안전, 공중 보건 또는 환경 위생을 위한 검사 실시 기간에 통보된 수입화물 경우

○ 덤핑방지관세, 반차별 관세, 반보조금 관세, 보호관세조치, 할당량 관세 조치를 적용되는 국가들에서 수입 화물 경우

○ 수입 화물은 베트남법이나 베트남을 회원으로 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 □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인증

○ 수입자는 수입 화물의 대한 원산지를 사전 인증 받고자 하면 수입할 화물에 대한 세관 확인된 관련 공문이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 수입화물의 원산지 확정 및 검사 수속

○ 수입자의 통관 신고서를 받은 후에 세관기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 진행한다.

○ 수입한 화물이 원산지 사전인증에 언급된 화물과 같으면 세관이 원산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없다. 수입된 화물이 원산지 사전인증에 언급된 화물과 같지 않

으면 세관이 법적 근거로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재확인한다.

○ 원산지 및 관련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갈 경우 세관이 검사 요청 및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검사 요청할 때 검사이유, 원산지 증명서과 화물의 원산지의 정확도에 대한 의심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 검사 업무는 수입자가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0일 초과하지 않고 완료해야 한다.

## 통관부서 연락처

### 1. 관세총국

○ 주소: Block E3, Yen Hoa Urban, Cau Giay Dist, Hanoi

○ 전화: (+84-4) 4452 0606

○ 이메일: webmaster@customs.gov.vn

### 2. 호치민 관세국

○ 주소: 02 Ham Ngi Str, Ben Nghe Ward, Dist 1, Hochiminh.

○ 전화: (+84-8) 38. 291. 422

○ 팩스: (+84-8) 38. 290. 096

○ 웹사이트: www.haiquan.hochiminhcity.gov.vn

## 3. 관세행정조직

### □ 조직구조

○ 본청(해관총국)-지방청(시·성 해관국)-일선세관(공단 해관지국)의 3층구조

○ 전국 63개 시·성중 33개에 해관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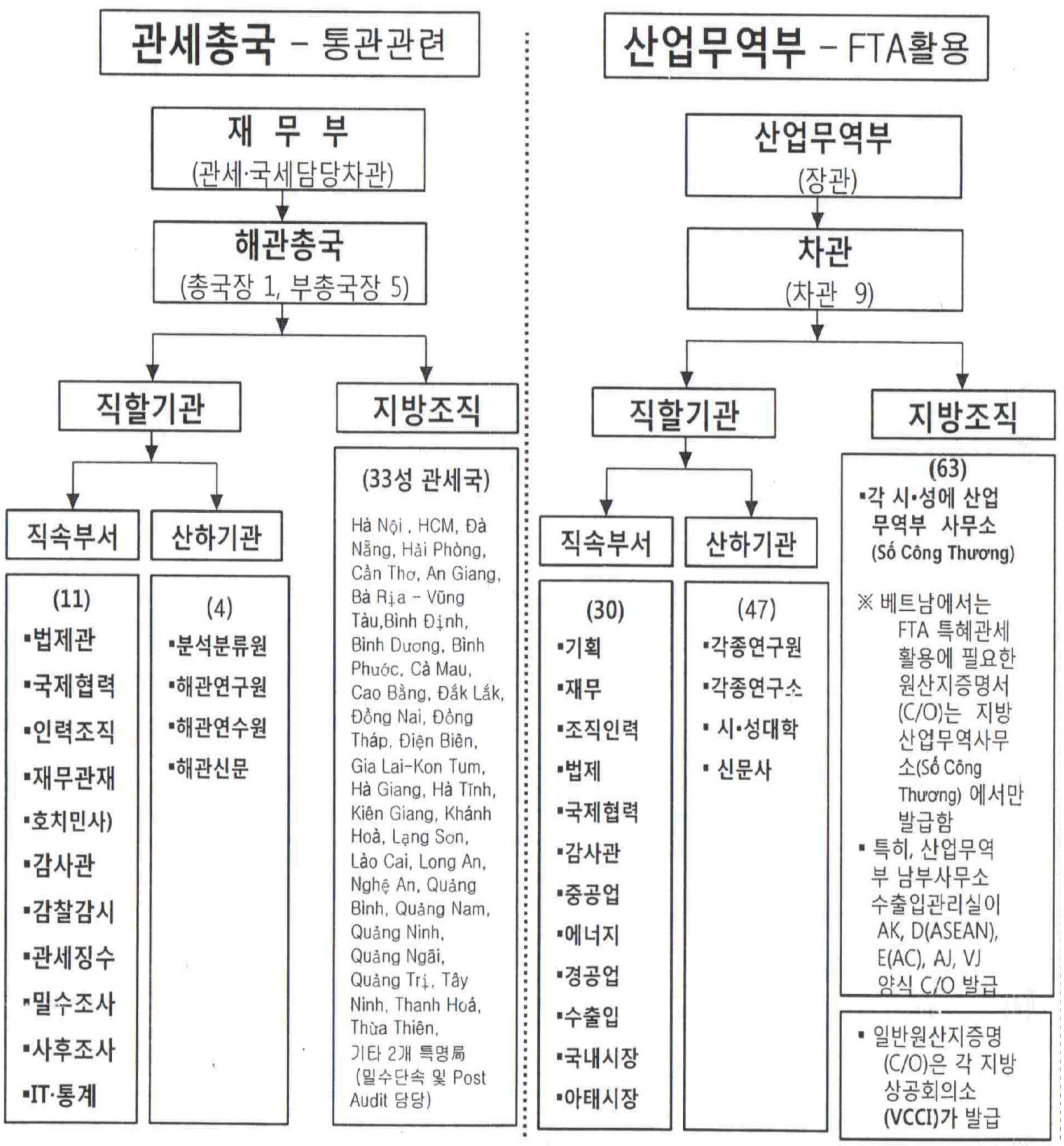

chapter 02

# 관세정책 및 제도

## 제1절 관세정책

### 가. 수출입 세법

□ **적용범위**

○ 이 법률은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규정이다. 국경지대 거주민의 국경을 통한 매매, 교환물품 및 기타 교환물품은 수출입물품으로 간주된다.

□ **과세대상**

○ 이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과세대상이다.
-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
- 국내시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

□ **비과세대상**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비과세대상이다.
- 베트남 국경, 국경관문을 빌려 이동되는 물품, 정부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물품

- 인도적 원조물품, 무상 원조물품
-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 수출시 국가자원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석유가스 물품

### □ 납세대상

○ 이 법률의 제2조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속한 수출, 수입 물품이 있는 법인, 개인은 수출세, 수입세 납세대상이다.

### □ 용어 해석

○ 이 법률에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보세구역'은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한 경제구역으로 지리적인 구역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다. 보세구역과 외부 구역간의 매매, 교환관계는 수출입 관계으로 간주된다.
- '자위를 위한 관세조치'는 국내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베트남에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이다.
-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의 수량 또는 가액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또는 유사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직접 경쟁물품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한 물품이다.
- '종량세'는 수출, 수입 물품 단위당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되는 세액이다.
- '이동재산(이사화물)'은 베트남내 또는 외국에서 거주를 종료하고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개인, 가정, 법인의 생활,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칭한다.
-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은 국경지대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다.

### □ 국제조약의 적용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이 법률에 규정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조항과 상치되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에 대한 세액

○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시기별로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적용을 규정한다.

##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과세방법 및 과세통화

○ 수출세, 수입세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 백분율에 따른 세율이며,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 및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이다

○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가격 및 과세 시점 세율표에 기재된 품목별 세율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종량세 적용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 시점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절대세액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통화는 베트남 통화며, 외화납부가 허가된 경우 교환이 자유로운 외화로 납부해야 한다.

### □ 과세가격 및 과세환율

○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다.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고 계약에 따라 최초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트남 통화와 외국통화간 환율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과세 시점에 발표한 교환환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과세가격의 확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 세율

○ 수출물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은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을 포함한다.

- 우대세율은 무역관계에서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 일반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일반세율은 정부 규정에 상응하여 각 품목별 우대세율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 제2절 관세제도

### □ 관세의 종류

○ 199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 개정수출입관세법에서는 일반관세, 특혜관세, 특별 특혜관세가 있음

◈ **일반관세율(Ordinary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
- 특혜관세율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
- 우대관세의 150%에 해당하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특혜관세율(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에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본, 미국, EU 등 163개국이 적용대상

- 개념상 특별특혜관세율 적용국가 포함

◈ **특별 특혜관세율(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물품에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협정관세,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협정관세가 이에 해당

※ 특혜관세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필요

○ 이외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특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음

## □ 관세 부과대상 및 세율

○ 세금부과 대상은 정부허가로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이며 세율은 품질, 성격,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 수출품은 FOB가격, 수입품은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세가격은 베트남 화폐를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임
- 인보인스가 없는 경우와 정부 또는 관세총국이 정한 최저가격표 금액의 7할을 밑도는 경우, 수입관세는 최저가격표 금액에 기인하여 과세됨

○ 일정품목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함

- 상품판매 결제가 현금이거나 바터형태이거나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
- 농산물 수입관세는 30-50%정도이며 주류, 담배 등은 100~120%로 높음

○ 수입관세인하를 위한 제품의 UNDER VALUE

- 수입관세 인하를 위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 UNDER VALUE적발시 세관에 비치된 자체 TARIFF기준으로 과세
- 자체 TARIFF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을 적용
- 시장가격조사 및 가격산정까지 소요기간 예측불가로 많은 피해발생

### □ 관세 면제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반입
-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 EPZ(수출가공구)에서 수출입되는 물자, 단 EPZ가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제외
- 인도적 원조, 교육, 연구기관의 연구 및 과학탐구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 □ 관세 환급

○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 및 외국인의 상호 사업협력계약하의 상품 수출입, 기타 투자장려가 필요한 경우
- 재수출을 위해 항구에 보관된 기관세금과 수입상품 중 수출이 이행된 경우
- 수출관세를 납품한 상품 중 수출허가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품
- 관세율표보다 수출관세가 많이 부과된 수출상품

## 라. 분쟁해결제도

### □ 분쟁해결 절차

○ 베트남은 모든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조정우선주의를 채택
- 외자기업의 기업활동 관련하여 베트남측 경제주체와 발생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타협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함
- 협상과 화해에 의해 양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베트남 경제중재기구나 다른 중재기구에 회부할 수 있음
- 외자법상으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베트남 중재기관, 제3국 중재기관, 혹은 국제중재기관 및 당사자간에 의해 선정된 중재기구를 이용할 수 있음

※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서 국제중재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져 국제중재제도를 많이 이용

○ 외자기업과 베트남기업과의 국제경제분쟁은 중재에 의한 베트남 법에 근거하는 피고주의 채택

- 외국출자자가 원재료와 기자재를 본국에서 조달하여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수출한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회사가 있는 베트남의 제도와 법률적용

## □ 국제중재센터

○ 베트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한 중재기관으로는 1993년 4월에 설립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가 있음

-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은 93년 8월 발효되었고 중재영역은 무역, 투자, 관광, 수송, 국제보험, 기술이전, 국제금융, 국제간의 대금결제 등
- 중재심리는 3인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인 중재도 가능
- 일반적으로 중재심리는 하노이에서 열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베트남내 다른 곳에서도 개최가능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중재심리 취하는 원고의 중재취소, 그 외 원고가 필요한 행동을 6개월 이상 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고 중재판정이 나면 30일 이내에 결석자에게도 중재판정서가 송부됨
- 사용언어는 베트남어이나 자기부담으로 통역과 번역을 구하는 것 가능
- 중재판정은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소수의견도 중재판단서에 명기됨

chapter 03

# 검역제도

## 품목별 검역제도

### 가. 신선농산물:

○ 농업농촌개발부가 발행한 39/2012/TT-BNNPTNT 시행령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신선식품은 수입하기 전에 검역 검사 받아야 한다.

-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된 나무 종자
- 신선 과일
- 잔디 및 잔디 종자 종류
- 유용한 생물 및 식물 자원에 해로운 기타 생물
- 목재 및 검역 받지 않은 자른 목재

○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Pest Risk Analysis: PRA): 베트남에서 정한 병충해, 혹은 관리가 필요한 병충해인지 확인하고 검사방법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 □ 범위 및 적용 대상

○ 대상 : 베트남에 수입하기 전,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할 식물

○ 범위 : 국내 및 외국 수입업체와 수입개인업자

### □ 신청서류접수

○ 필수서류:

- 수입식품 검역 신청서 (부록1에 양식 첨부)
- PRA 분석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한 서류를 제출 (부록2)

### □ 검역검사 및 결과 통보기간

○ 검역기관은 수입품목을 바로 검역검사 한다. PRA 분석 과정은 2006년 12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096/QĐ-BNN-KHCN인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4096/QĐ-BNN-KHCN 규정은 식물 및 수입식물제품 대상 검역 검사 과정으로 식물 검역 기준을 첨부하여 발급된다.

- 세부 결과 통보 기간은 부록3 참고

### □ 검역 안전증명서를 발급

○ 검역 검사결과에 따라 식물검역원은 아래와 같은 검역안전증명서를 발급한다.

- 병충해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입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한다.
- 병충해 위험성이 발생 가능하지만 검사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수입 조건 및 식물 검역방법과 첨부된 수입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한다.
- 병충해 위험도가 높고 국내 농업생산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식물 검역안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 □ 수입허가증 효력 기간 및 양식

○ 수입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비슷한 품목 또는 동일한 종자가 있는 품목은 한 번만 검역을 받고 그 결과는 다음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적용된다.

- 수입허가증 양식은 부록4 참고

chapter 04

# 라벨링제도

##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 가. 일반조항

#### □ 적용 범위

○ 정부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출입 상품들의 라벨에 대한 관리 및 작성하는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한다.

○ 다음 물건들은 이 법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a. 부동산

b. 상품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상품 또는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국경 게이트에서 전송하는 상품

c. 선물, 기부금, 출국·입국하는 사람들의 수하물 이동자산.

d. a,b,c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상 외에 시장의 발전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추가 제안한 것

#### □ 적용 대상

○ 라벨링 법령은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 및 상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된다.

### □ 라벨링 의무사항

○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출입 상품은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라벨 필요없는 상품:

-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신선식품으로 포장없이 가공하게 되는 식품
- 소비자와 협정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포장 없는 연료, 원재료(농산물, 수산물, 임산), 건축 재료(벽돌, 타일 석회, 모래, 돌, 자갈, 시멘트, 흙, 유발, 상업 혼합 콘크리트), 스크랩 (생산, 판매).

○ 베트남 상품을 수출입하는 외국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상품 판매 계약에 의해 상품의 라벨링 요구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베트남 법률 및 수입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 라벨링 위치

○ 상품의 라벨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며,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라벨에 모든 필수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상품의 라벨에 내용, 상품명,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의 이름,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해야 한다.
- 다른 요구 내용은 상품에 첨부된 서류에 기록하고, 상품의 라벨에 그 내용을 적는 장소도 기입해야 한다.

### □ 라벨링 치수

○ 상품의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는 상품의 치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법령의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전체 필수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하고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라벨링 형태

○ 상품의 라벨에 기록된 문자의 색깔, 숫자, 그림, 사진, 손짓, 기호가 뚜렷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필수 내용들에게 문자, 숫자의 색깔이 상품의 라벨 배경색상과 대조해야 한다.

### □ 라벨링 표기언어

○ 상품의 라벨에 필수 내용들은 베트남어로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제 4 조에 규정된 경우 제외.

○ 이 조항의 1항에 있는 규정 외에 국내에서 생산해서 유통하는 상품의 라벨에 외국어로 표시 가능하다. 외국어 표시내용은 베트남어 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글자의 치수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의 글자의 치수보다 더 크면 안 된다.

○ 베트남에 수입된 상품으로 라벨에서 베트남어로 필수내용이 아직 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는 별도 라벨을 추가해야 하며, 오리지널 라벨을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어 표시내용은 오리지널 라벨링 내용과 상응해야 한다.

○ 다음 내용에서 오리지널 라틴 알파벳이 있는 외국어로 쓸 수 있음:
- 인체용 의약품의 베트남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나 과학 이름
- 국제 이름이나 화학물질의 화학공식, 구성공식 첨부된 과학 이름
- 베트남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 이름이나 성분, 양적 성분의 과학 이름
- 외국 제조업체, 상품 프랜차이즈의 이름 및 주소

### □ 상품의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

○ 상품의 라벨 및 부가 라벨의 내용은 성실성, 뚜렷함, 정확함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 제조, 가공, 포장해서 유통하는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생산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한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수출하는 개인 및 단체는 라벨을 기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존 라벨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령의 제9조 3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개인 및 단체는 기존 라벨을 잘 보관하고, 유통하기 전에 부가 라벨을 추가해야 한다.

## 나.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처리

### □ 상품 라벨링에 대한 위반 처리 재판권

○ 인민 경찰 기관, 항구에 설치되는 세관사무소, 시장관리, 상품의 품질관리, 전문화된 검찰관 및 기타기관은 할당하게 되는 직능, 책임, 권한 범위 중에서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행위를 탐지할 시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권한이 있다.

### □ 생산유통 및 수출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위반 처리

○ 상품의 라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개인, 단체는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 처벌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 □ 국가 관리기관 소속에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반 처리

○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해서 상품의 라벨에 대해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나 형사 책임 처벌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의 규칙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 □ 상품의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 상품의 라벨에다가 다음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상품의 이름
-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성함 및 주소
- 상품의 원산지

○ 이 조항의 1번에 규정된 내용 외에 상품의 특징에 따라 이 법령의 제12조에 반드시 명시된 내용, 법률 문서 및 관련된 전공 법령 규정에 표시해야 된다.

### □ 상품의 특징에 따라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1. 곡물
   a) 중량
   b) 제조 일자
   c) 유통기한
2. 식품
   a) 중량
   b) 제조 일자
   c) 유통기한
   d) 성분이나 중량 성분
   đ) 위생, 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e) 사용법, 보관 안내
3. 음료수(술 제외)
   a) 중량
   b) 제조 일자
   c) 유통기한
   d) 성분이나 중량 성분

đ) 위생, 안전에 대한 경보 및 안내

e) 사용법, 보관 안내

4. 술

a) 중량

b) 에타놀 (etanol) 함량

c) 보관 안내 (와인 경우)

5. 담배

a) 중량

b) 제조 일자

c) 위생, 건강 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6. 식품의 첨가물

a) 중량

b) 제조 일자

c) 유통기한

d) 중량 성분

đ) 사용법, 보관 안내

7. 사료

a) 중량

b) 제조 일자

c) 유통기한

d) 중량 성분

đ) 사용법, 보관 안내

**□ 상품명**

○ 생산 및 사업 개인, 단체가 스스로 라벨에서 적는 상품명을 정하고. 상품의 효능 및 특성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상품명을 정확하게 지어야 한다.

○ 상품 성분에 있는 물질의 이름을 사용해서 상품 이름이나 상품 이름의 일부분을

짓는 경우에는 그 성분의 용량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이 법령의 제 18 조 4목에서 지정하는 경우 제외.

### □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이름 및 주소

○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단체의 성함 및 주소를 적는 것은 다음 자세한 경우에 따라 지정한다.

-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 : 그 상품을 생산하는 단체,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해 수입하는 상품 : 생산하는 단체, 개인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수입 단체나 수입 개인의 이름 및 주소
- 베트남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외국 상인의 직접 판매 대리점인 개인,단체의 상품은 생산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그 상품을 판매 대리점인 개인, 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 다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하거나 허락을 받게 된 상품이라면 이 조항의 1,2와 3목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하거나 허락하는 개인, 단체의 이름하고 주소를 추가해야 한다.

### □ 상품의 중량

○ 측정단위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베트남 법에 따라 측정단위를 표시한다.

○ 수량으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숫자로 써야 한다.

○ 동일 포장중에서 여러 상품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단위 별로 중량 및 상품 총 단위의 중량을 써야 한다. 또한 상품 단위별로 중량 및 상품 단위의 수량을 써야 한다.

○ 상품의 중량을 쓰는 방법은 이 법령의 부록 I에 규정을 하게 되다.

### □ 제조일자, 유통기간, 보관기간

○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기한은 양력 연도에 따라 일,월,년으로 순서대로 쓴다.

-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표시하고 년를 표시하는 숫자는 네

자릿수로 표시 가능하다. 그리고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같은 줄로 표시해야 한다.

- 생산 시간을 월(달)로 표시하는 규정인 경우에는 양력 년도의 월 및 년의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 생산 시간을 연으로 표시하는 규정인 경우에는 양력 년도의 숫자 4 개를 표시해야 한다.

○ 이 법령에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및 보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상품인데 상품의 라벨은 이 조항의 1목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를 작성하게 되었으면 상품의 유통기한이나 보관기한은 제조 일자부터 기간으로 표시 가능하다.

○ 이 조항에 1목에 있는 규정과 다른 시간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 상품이라면 이 법령의 부록II에서 지정한다.

### □ 상품의 원산지

○ 원산지를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게 된다. “어디에서 생산”이나 “어디에서 제조”나 “원산지”와 상품의 생산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기록한다.

○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유통하는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록한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기록할 필요없다.

### □ 성분, 중량성분

○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원재료 및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완제품에서 존재하는 첨가물을 의미한다. 또한 변경된 원자재의 형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품에 관심을 끌기 위해 라벨에 나와 있는 원재료 성분의 이름을 표시할 시 그 원재료 성분의 중량도 표시해야  한다.

○ 중량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성분 및 성분별로 하나씩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다. 상품의 특성 및 상태에 따라 표시된 중량 성분은 상품 한 단위에서 그 성분의 용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혹은 다음 비율 중 하나에 의해 표시: 용량 및 체

적; 용량의 퍼센트; 체적의 퍼센트.

○ 일부 상품 종류에게 성분, 중량 성분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성분은 첨가물이라면 첨가물 그룹 이름, 첨가물 이름, 국제 코드 (있는 경우)를 써야 한다. 또는 첨가물은 감미제, 색소가 포함되며, 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하는 것 외에 "자연" 물질이나 "합성" 물질인지도 표시해야 한다.
- 인체용 의약품, 백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 기원의 제품, probiotics 생물 제품, 동물용 의약품, 식물보호 의약품이라면 활성 화합물의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성분 및 첨가물을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 금속 가구, 사용 가치를 결정하는 메인 재료로 만든 도구라면 메인 원재료 성분의 이름 및 상품명을 표시해야 하고 성분 및 양적 성분으로 표시할 필요 없음.

○ 상품의 성분, 중량 성분은 이 조항의 3목에 있는 규정과 다른 경우에 이 법령의 부록III에서 지정하게 된다.

### □ 기술정보, 위생안전에 대한 경고 및 안내

○ 전기 및 전자제품, 기계, 장비에 기본 기술정보를 써야 한다.

○ 인체용 의약품, 백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생물 수의사 제품, 식물 보고 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

- 의약품의 지정, 사용법, 금기(있는 경우)
- 등록번호, 생산 일괄번호, 조제형태, 포장규격
- 현재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종류별로 주요 증상

○ 특별한 방부제가 있는 인간, 동물, 환경에 유독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리스트에 있는 사용량을 지정하게 된 상품이라면 상품의 성분이나 혼합 성분에 있는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 증명서에 방부제의 이름을 추가해야 한다.

○ 상품이나 상품의 성분은 방사선에 노출되었거나 유전자 변형기술을 적용한 것인 경우에는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 상품의 기술명세와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안내 및 경고는 이 조항에서 2번 및 3번의 규정보다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 법령의 부록 IV에서 지정하게 된다.

### □ 라벨링에 표시하는 기타 내용

○ 상품의 라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는 라벨에다가 기타 내용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내용은 법을 위반하면 아니되고 정확하게 상품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라벨에서 쓰는 필수 내용과 다르거나 위조하면 아니된다.

수입식품 라벨링

유제품 영양표시

음료수 영양표시

스낵류 영양표시

## 자료출처

### 가. 웹사이트

1. www.customs.gov.vn (베트남관세총국)
2. www.moh.gov.vn (보건위생부)
3. www.omard.gov.vn (농업농촌개발부)
4. www.vfa.gov.vn (식품안전위생검역원)
5. www.cucthuy.gov.vn (수의검역원)
6. www.most.gov.vn (과학기술부)

## 나. 관련법규

1. 관세청법: 42/2005/QH11 (2005.6.14)
2. 화물의 통관철자 안내 시행규칙: 194/2010/TT-BTC (2010.12.6)
3. 원산지 규정: 19/2006/NĐ-CP (2006.2.20)
4. 수입식품 위생안전 검역 감사 규칙: 23/2007/QĐ-BYT (2007.3.29)
5. 수입동물식품 위생안전 검역 검사 규칙: 25/2010/TT-BNNPTNT (2010.4.8)
6. 수입식물식품 위생안전 검역 검사 규칙: 13/2011/TT-BNNPTNT (2011.3.16)
7. (신선 농산물) 수입 식물 병충해 위험 검역 48/2007/QĐ-BNN (2007.5.29)
8. 식품품질기준(성분분석): 2027/2001/QĐ-BYT (2001.5.30)
9. 라벨링 시행령: 89/2006/NĐ-CP (2006.8.30)

**부록1**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

**수입 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
**번호:.....**

수신:.....
수입업체/수입개인업자:.....
주소:.....전화:.....

저희 회사의 수입품목의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품목명:.....
과학명:.....
중량:.....
수량:.....
포장방식:.....
생산구역:.....
수출국:.....
운송수단:.....
수입국:.....
사용장소:.....
수입시간:.....
첨부
서류:.....

접수번호:...../년....월....일　　년.....월.....일
접수자　　신청자

**부록2**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PRA 분석하기 위한 필수 관련 서류**

제출할 서류는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수출국에서 사용이 효력이 있는 서류여야 한다.

**1. 식물 및 식물 제품**

1.1 과학명:

1.2 일반명:

1.3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 또는 병충해를 극복할 수 없는 종자

1.4 이 품목을 수입한 적이 있는 나라:

**2. 생산지**

2.1 생산 지역: ...동/....구..../성(시)

2.2 지도에 생산 지역 위치(국가):

2.3 수출 능력 (ton/년)

**3 재배법**

3.1 일반적인 검사 관리 프로그램 및 병충해 검역 관리

3.2 전염되지 않은 지역 정보

3.3 수확 기간 및 수확 방법

3.4 지방에서(수출국) 식물 보호-검역 방법

**4 병충해 List**

4.1 과학명호

4.2 분류 위치

4.3 기타명호

4.4 일반명호

4.5 병충해에 걸린 종자

4.6 병충해에 걸린 나무 부분

4.7 병충해 증상
4.8 분배
4.9 병충해 상태 (보편적이나 적절히 나온 병충해)
4.10 관리 방법
4.10.1 재배 (병충해에 걸린 나무뿌리를 뽑거나 밭에 살충제로 청소하거나 곤충을 잡는 기구를 쓰거나 윤작...)
4.10.2 생물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를 고르거나 한 철에 농작을 하지 않거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물적 방법 사용...)
4.10.3 물리
4.10.4 화학 (농약 종류, 사용방법, 시간, 복용...)
4.11 병충해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한 참고 자료
4.12 위에 대한 관련한 자료

**5. 포장**
5.1 포장법
5.2 검사 방법 및 검사 비율
5.3 수확 이후 처리 방법
5.4 보관 창고의 안전도 및 조건

**6. 수출 프로그램**
6.1 사업 파트너
6.2 적용되어 있는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절차 (기준으로 하거나 특별한 경우, 관련한 보충 서류)

**7. 관련한 자료 사본**

## 부록3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 ▌병충해 위험성에 대한 검역기간 (서류심사) ▌

| 순서 | 식물 품목 | 기간 |
|---|---|---|
| 1 | **나무 종자** | |
| |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 3–10일 |
| | 처음 수입할 경우 | 1–3년 |
| |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 1–3년 |
| |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 90일 |
| | 조정이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60일 |
| 2 | **과실** | |
| | | |
| |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 3–10일 |
| | 처음 수입할 경우 | 1–3년 |
| |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 1–3년 |
| | | |
| |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 90일 |
| | | |
| |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60일 |
| 3 | **생물적인 병충해 예방 약물** | 30일 |
| 4 | **기타 수입 생식물** | 30일 |
| 5. | **기타 높은 위험도가 있는 식물 품목** | 60일 |
| | | |

## 부록3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 ▌병충해 위험성에 대한 검역기간 (서류심사) ▌

| 순서 | 식물 품목 | 기간 |
|---|---|---|
| 1 | **나무 종자** | |
| |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 3–10일 |
| | 처음 수입할 경우 | 1–3년 |
| |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 1–3년 |
| |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 90일 |
| |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60일 |
| 2 | **과실** | |
| | | |
| | 검역안전 증명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검역 결과가 나올 경우 | 3–10일 |
| | 처음 수입할 경우 | 1–3년 |
| | 수입한 적이 없는 품목일 경우 | 1–3년 |
| | | |
| | 수출국에서 전염병을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 90일 |
| | | |
| | 조정하기 필요한 병충해일 경우 (자주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번은 검역 검사를 받을 시 베트남에 정한 금지되거나 관리해야 한 병충해를 발현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고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60일 |
| 3 | **생물적인 병충해 예방 약물** | 30일 |
| 4 | **기타 수입 생식물** | 30일 |
| 5. | **기타 높은 위험도가 있는 식물 품목** | 60일 |
| | | |

**부록4**

(2009년 5월 29일에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발행된 48/2007/QĐ-BNN인 결정과 첨부되어 발행한다)

농업농촌개발부
식물검역원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

번호:...BVTV-KD

# 수입허가증

베트남의 식물 검역 및 식물 보호에 대한 법과 아래와 같은 서류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의 수입허가 발급 신청서:
☐ 검역 결과 보고 번호:....., 년.....월.....일:
식물보호원은 아래와 같은 수입업체 또는 수입 개인업자가 베트남에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
상호:.....
주소:.....
수출국:.....

검역을 받은 품목:
.....
.....
.....
과학명:.....
.....

아래와 같은 식물검역절차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1/ 수출국에서 적용된 처리 방법:
☐ 살충: 살충제:..... 복용량:..... 시간:.....
☐ 방사선 처리: 처리 근원:..... 정량:..... 시간:.....
☐ 베트남의 조정해야 하는 병충이 없는 구역에서 생산되다: 유☐ 무☐
(베트남의 금치 및 관리된 병충인지 검사하는 것임)
☐ 기타 방법:

2/ 수출국에서 발급된 식물 검역안전 증명서를 첨부:
3/ 이 수입식물품목은 아래와 같은 지정된 해관기관에 들어올 수 있다
……
……
……

식물 검역 수숙은 ……에서 완료해야 한다.
4/ 운반 일정:……
5/ 사용 장소:……
6/ 지정된 장소에 도착 시 수입업체나 수입개인업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수입 이후 지속적 검사하기 위하여 재배할 지방의 식물검역원에 통보한다.
☐ 수입 이후 식물검역센터에 통보한다.
☐ 식물검역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생산된다.
☐ 기타 식물검역 요청:……
……
……
……
……

7/ 이 수입허가증은 …..년…..월……일까지 유효가 있다.

Hanoi, ……년…….월……..일
식물검역원 장관
(sign and stamp)